

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846
----------	-----

2025. 3. 21.(금)
정책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25년 3월 4일

다. 회부일자 : 2025년 3월 5일

라. 상정일자 : 2025년 3월 13일

- 제42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박선희 외국인정책추진단장)

가. 제안사유

- 행정기구 개편(2024. 7. 1.)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, 다문화가족지원 협의회 일부 사항을 개정하여 그동안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 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장을 변경함(안 제7조)
 - ※ 양성평등가족정책관 ⇨ 다문화가족업무 담당 부서장
-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회의 개의 및 의결방법을 신설함(안 제9조의2)

3. 검토보고 요지

가. 제출배경

- 충청북도는 지난해 7월 1일부로 행정부지사 직속의 ‘외국인정책추진단’을 신설하여 외국인 및 다문화 업무를 전담하도록 함
- 이에 따라 행정기구 개편 사항을 반영하고,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회의 개의 및 의결방법 등을 신설하여 회의 운영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

나. 주요내용 검토

- 이 개정안은 안 제7조(협의회의 구성)제2항을 개정하고, 안 제9조의2(협의회의 운영)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음
- **안 제7조**는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)의 구성 중에서 제2항에 규정된 위원장을 ‘양성평등가족정책관’에서 ‘다문화가족업무 담당 부서장’으로 변경하려는 것임

현 행	전부개정안	비고
제7조(협의회의 구성)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양성평등가족정책관이 된다.	제7조(협의회의 구성)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<u>다문화가족업무 담당 부서장</u> 이 된다.	위원장 변경

- 지난해 7월 1일부로 다문화 관련 업무가 ‘양성평등가족정책관’에서 신설된 조직인 ‘외국인정책추진단’으로 이관되었으나, 조례 개정은 되지 않아, 약 8개월간 입법 미비 상태에 있었음¹⁾

1) ① 지난해 5월 조직개편 및 업무 이관과 관련된 입법예고가 있었고, ② 전 부서(양성평등가족정책관)에서 조례 개정 후 업무를 이관하거나, ③ 법제담당부서(법무혁신담당관)에서 「충

- 협의회 위원장을 기존 조례에 적용했던 방식대로 ‘외국인정책추진 단장’이 아닌 ‘다문화가족업무 담당 부서장’으로 한 것은 다문화 업무 담당부서의 변경에 따른 조례 개정 소요를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보여지며,
- 제10조에서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‘다문화가족 업무 담당 사무관’을 간사로 둔다고 규정²⁾한 것과 동일한 표현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조례 체계 등의 통일성 유지 측면에서 적절함
- 다만, 담당 부서에서는 2023년 12월 29일 제정·시행된 후 현재까지 구성되지 않은 협의회를 지체없이 구성하고,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³⁾

○ **안 제9조의2**는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회의 소집과 의결 방법 등 회의 운영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

현 행	전부개정안	비고
<신 설>	제9조의2(협회의 운영) ① 위원장은 협회의 회의를 소집한다. ② 협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	협의회 운영 관련 사항 신설

- 각종 위원회(위원회, 심의회, 협의회 등)에 관한 규정 중 중요한 규정 중 하나는 회의의 소집권자와 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것임
- 신설하려는 조문은 이에 관한 것으로 협의회 회의의 운영을 명확히

충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의 일부개정 시에 부칙 제4조의 ‘다른 조례의 개정’에 포함하여 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, ④ 현 부서(외국인정책추진단)에서 업무 이관 즉시 조례를 개정할 수 있었음에도 각 부서에서 조례 개정을 소홀히 한 결과임

- 2) **제10조(간사)** 협의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다문화가족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.
- 3) 협의회는 이 조례 시행 이전인 舊 「충청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」 제8조에 따라 ‘충청북도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’로 운영되었고, 2023년 12월 29일 현 조례로 제정에 따라 ‘충청북도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’로 분리되었으나, 조례 시행 이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실적이 없음

하려는 것으로 적절함

- 이 조례와 유사한 성격인 「충청북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」 제11조(회의)4와 「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11조(위원회의 운영)5)에는 관련 사항을 이미 규정하고 있어 충청북도 법제 체계의 통일성과 정합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음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(필요성) 이 개정안은 지난해 7월 1일, 외국인정책추진단의 신설 및 다문화 정책의 이관으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조직개편에 맞게 현행화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있음
- (타당성) 또한, 협의회 회의의 절차와 협의회 의결에 있어 ‘다수결의 원칙’을 반영하는 등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그 내용은 타당함
- 다만, 약 8개월간 개정을 서두르지 않고 조례 시행 이후 협의회 운영 실적이 없는 것은 충청북도의 입법행정과 다문화 정책의 문제점이 드러난 것으로 앞으로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4) 제11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5) 제11조(위원회의 운영)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, 정기회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,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.

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충청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양성평등가족정책관”을 “다문화가족업무 담당 부서장”으로 한다.

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2(협의회의 운영)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.

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협의회 구성) ① (생략)</p> <p>② 협의회 위원장은 <u>양성평등가족정책관</u>이 된다.</p> <p>③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7조(협의회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다문화가족업무 담당 부서장</u>-----</p> <p>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제9조의2(협의회 운영)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한다.</u></p> <p><u>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u></p>

관련법령 발취

□ 다문화가족지원법

제1조(목적) 이 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경제·사회·문화 등 각 분야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 및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 중 외국인정책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.

충청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행정기구 개편('24.7.1.)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,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일부 사항을 개정하여 그동안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 하려는 것임
-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따른 수당 지급

2. 비용 발생 요인

-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 참석, 안전검토에 대한 수당 및 여비 등 지급

3. 관련조문

-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(안 제6조)
- 회의(안 제10조)

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 수당 지급
- 7명(최소참석인원)*100천원(참석수당)*2회

나. 추계 결과

- 조례가 제정될 경우, 2025년부터 2029년까지 향후 5년간 7,000천원이 소요 될 것으로 추정

다. 재원조달방안

- 일반회계 7,000천원(도비 7,000천원)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 : 붙임

6. 작성자 :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 선 희

< 연도별 비용 추계표 >

(단위 : 천원)

구 분	1차년도 (2025년)	2차년도 (2026년)	3차년도 (2027년)	4차년도 (2028년)	5차년도 (2029년)	계
세 입	-	-	-	-	-	-
세 출						
위원회 수당 (정책기획관 Pool)	1,400	1,400	1,400	1,400	1,400	7,000
재원 조달						
의존 재원						
국고보조금						
자체 수입						
도비 일반회계	1,400	1,400	1,400	1,400	1,400	7,000
시·군비						
자부담	-	-	-	-	-	-